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등〉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3
1. 취업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 확대	3
2.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 역량 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채용	8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감면 이용 확대	13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출자 : 황희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4. 8. 30..
3. 회부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

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
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IV. 검토의견

1 취업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 확대(안 제14조제3항)

-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동 지원대상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생략)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u>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 ----- ----- --- <u>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 ----- <u>10년</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하여 취업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③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 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을 하기 위해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²⁾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2024년 187억원의 규모로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직업교육훈련지원, 제대군인수업료보조,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및 홍보 등의 내역사업을 수행 중임.

1)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코드: 4160-390

<현행 취업지원 제도 개관>

구 분	지원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 취업실시기관 보훈특별고용 실시(국가유공자 준용)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이상 ~ 10년미만)	❖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1인당 120만원 한도, 총 3회가능, 자부담 10%) 직업능력개발 교육비(1인당 150만원 한도, 자부담 20%)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 제14조제3항은 ‘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③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을 의무화하고, 채용박람회 지원 대상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현재도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 여력 및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대상을 ‘전역 후 몇 년까지’로 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101명의 공무원(직업상담사)들이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전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취업알선 등을 의무화 할 경우 현재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조직만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대상을 ‘전역 후 10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전역 후 5년’ 이내의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매년 900명대의 전·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전상 및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인원	1,599	864	880	597	696	927

자료: 국가보훈부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는 점에서 입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1급~7급)에게도 취업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신체적 희생이 적은 경상이자(등급미달자)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알선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 역량 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채용

□ 개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게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1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신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6조(적용 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적용 제외)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3.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에서 직업교육훈련(제13조), 취업지원 등(제14조), 특수직종 우선고용(제15조), 채용 시 우대(제16조)³⁾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제14조제1항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하여’ 취업지원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제14조(취업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 현행법 제16조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 채용 시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 ③ (생략)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36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복무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문언상으로만 이해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경우 “복무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라면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취업지원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해됨.

이와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시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 16조의 전체적인 입법 체계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대군인의 채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제대군인 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를 의무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다른 대상자들에 비하여 제대군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는 제대군인 외 국가유공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감면 이용 확대

-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무료 또는 할인 가능 시설 범위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u>고궁 및 공원</u>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 ----- ----- ----- <u>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3조제1항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별표 2는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음.⁶⁾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건립·운영하는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2. 삭제 <2007.12.20>	
3.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100분의 50
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민속박물관	100분의 50

□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무료 또는 할인 가능 시설 범위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명시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그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류 및 감면 비율’에 대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별표 2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예를 들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사상자 대상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이용 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그러나, 강화군 공립박물관은 의사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의사상자가 관람료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2.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무료 또는 감면 가능 시설
범위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명시함으로써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의무복무자 유형별 비교표

구분		복무기간	복무내용	급여	감독기관
현역	병	18개월(육군) 18개월(해병) 20개월(해군) 21개월(공군)	국토방위	병장 125만원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ROTC 28개월 학사장교 등 3년		소위 ~ 중위 수준	
	단기복무 부사관	5년 미만			
전환복무*	의무경찰	18개월	치안유지	현역병과 동일	경찰청
	의무경찰(해양)	20개월	해양안전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20개월	재난안전·구조		소방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1개월	공공서비스 제공	현역병과 동일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익법무관	3년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법률사무 지원	중위 수준	법무부
	공중보건 의사	3년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중위 ~ 대위 수준	보건복지부
	공중방역수의사	3년	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 지원	중위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3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전담	중위 ~ 대위 수준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34개월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민간 근무자 수준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근무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예술·체육분야 종사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현역복무 간주	상근예비역	18개월	예비군중대 등	현역병과 동일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3년	항해기관사로 해운업체 승선원으로 근무	민간 근무자 수준	해양수산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3년	교정시설 지원	현역병과 동일	법무부 (교정본부)

* 전환복무는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

참고 2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현황

구분	법정의무 복무기간	근거법령	실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근거	감독기관	
현역	병	2년(육군) 2년(해병) 2년 2개월(해군) 2년 3개월(공군)	병역법 제18조제2항	<u>1년 6개월</u> (육군) <u>1년 6개월</u> (해병) <u>1년 8개월</u> (해군) <u>1년 9개월</u> (공군)	병역법 제19조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3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ROTC <u>2년 4개월</u> 학사장교 등 <u>3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4호	
	단기복무 부사관	4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임기제) <u>4년의 범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가목 (병역법제20조의 2제1항)	
				군인사법 제6조제7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u>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다목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u>3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라목	
전환복무	의무경찰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경찰청
	" (해양)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소방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병역법 제30조	<u>21개월</u>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법무관	3년	병역법 제34조의6	<u>3년</u>	-	법무부
	공중보건 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u>3년</u>	-	복지부
	공중방역수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의7	<u>3년</u>	-	농림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u>3년</u>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 제39조	<u>2년 10개월</u> (현역대상) <u>1년 11개월</u> (보충역대상)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병역법 제39조	<u>3년</u>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34개월	병역법 제33조의8	<u>34개월</u>	-	문체부
기타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2년 6개월 이내	병역법 제23조	<u>18개월</u>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3년	병역법 제23조의2	<u>3년</u>	-	해수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20년부터 모집)	3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u>3년</u>	-	법무부 (교정본부)

참고 3

최근 5년간 의무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 현역병 및 보충역 등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역병		251,575	247,839	233,463	225,833	197,135
(상근예비역, <u>승선근무예비역</u> 포함)		<u>991</u>	<u>930</u>	<u>855</u>	<u>606</u>	<u>640</u>
전환 복무*	의무경찰	13,689	9,288	6,941	3,018	1,122
	의무경찰(해양)	1,508	1,275	967	967	376
	의무소방원	591	710	566	486	93
	소 계	15,788	11,273	8,474	4,471	1,591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34,435	35,996	34,868	33,816	33,243
	산업기능요원	11,450	11,909	11,268	9,162	8,642
	전문연구요원	2,349	2,612	2,825	2,796	2,528
	공중보건 의사	1,179	1,335	987	1,192	1,287
	공중방역수의사	189	148	199	150	148
	병역판정 의사	51	45	49	51	51
	공익법무관	205	178	86	60	54
	예술체육요원	31	10	28	49	29
	소 계	49,889	52,233	50,310	47,276	45,982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	-	1	2	105
합계		317,252	311,345	292,248	277,582	244,813

* 전환복무는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 교	4,906	5,031	5,162	5,606	4,650
부 사 관	5,126	6,517	7,307	8,760	4,962
합 계	10,032	11,548	12,469	14,366	9,612

참고 4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관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근 거																											
의무복무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험 면접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제16조①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200인) 권장사항	제16조③																											
	의 치 료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제20조①																											
		❖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제20조④																											
	취 직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만 해당	제14조③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 10년미만)	진 출 연	❖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1인당 120만원 한도, 총 3회가능, 자부담 10%) 직업능력개발 교육비(1인당 150만원 한도, 자부담 20%)	제13조①																											
	저 직 지원금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제23조의2																											
	기타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장사법 제23조의2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직	❖ 취업실시기관 보훈특별고용 실시(국가유공자 준용)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제14조①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교 육	❖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3년 이내자 지원	제19조①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제19조②																											
	의 치 료	❖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제20조②																											
	대 지 부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주택</th><th rowspan="2">사업</th><th rowspan="2">농토 구입</th><th rowspan="2">생활 안정</th><th rowspan="2">학자 금</th></tr><tr><th>아파트 분양</th><th>주택구입 (신축)</th><th>주택 임차</th></tr><tr><td>한도 (만원)</td><td>4,000~ 8,000</td><td>4,000~ 8,000</td><td>2,000~ 5,200</td><td>2,000</td><td>3,000</td><td>300</td><td>학기당 500</td></tr><tr><td>연리(%)</td><td>3.5</td><td>3.5</td><td>3.5</td><td>4.5</td><td>3.5</td><td>3.5</td><td>4.5</td></tr></table>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 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제21조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 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주 택 우 선 공 급	❖ 「공공주택 우선공급(기관추천 아파트특별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주택법 근거)	제22조																												
아 지 장 원	❖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국립묘지법 제5조																												

참고5

제대군인 취업 관련 통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연차별 취업여부 현황>

* 취·창업일 기준 : '24.9.30.

구 분		전역 자수	취·창업자 수							미 취·창 업자	미 취·창 업률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10 년		
2014년	계	4,209	3,345	1,192	1,303	414	201	87	148	864	20.5%
	장기	2,788	2,223	886	857	242	107	42	89	565	20.3%
	중기	1,421	1,122	306	446	172	94	45	59	299	21.0%
2015년	계	4,973	3,960	1,522	1,531	467	217	95	128	1,013	20.4%
	장기	3,267	2,658	1,136	1,042	257	99	47	77	609	18.6%
	중기	1,706	1,302	386	489	210	118	48	51	404	23.7%
2016년	계	5,036	3,989	1,516	1,540	484	240	99	110	1,047	20.8%
	장기	2,580	2,070	919	750	202	105	34	60	510	19.8%
	중기	2,456	1,919	597	790	282	135	65	50	537	21.9%
2017년	계	5,501	4,314	1,623	1,671	517	258	63	182	1,187	21.6%
	장기	2,878	2,276	947	879	239	97	28	86	602	20.9%
	중기	2,623	2,038	676	792	278	161	35	96	585	22.3%
2018년	계	5,964	4,821	1,705	1,692	600	245	92	487	1,143	19.2%
	장기	3,204	2,571	1,002	878	277	123	46	245	633	19.8%
	중기	2,760	2,250	703	814	323	122	46	242	510	18.5%
2019년	계	8,271	6,906	1,790	1,625	545	266	91	2,589	1,365	16.5%
	장기	4,503	3,748	1,120	894	239	120	43	1,332	755	16.8%
	중기	3,768	3,158	670	731	306	146	48	1,257	610	16.2%
2020년	계	5,372	3,862	1,608	1,500	504	194	56	-	1,510	28.1%
	장기	3,165	2,227	1,049	819	244	92	23	-	938	29.6%
	중기	2,207	1,635	559	681	260	102	33	-	572	25.9%
2021년	계	5,128	3,515	1,540	1,444	408	123	-	-	1,613	31.5%
	장기	3,167	2,145	1,041	859	190	55	-	-	1,022	32.3%
	중기	1,961	1,370	499	585	218	68	-	-	591	30.1%
2022년	계	6,203	4,160	2,036	1,753	371	-	-	-	2,043	32.9%
	장기	3,776	2,515	1,385	962	168	-	-	-	1,261	33.4%
	중기	2,427	1,645	651	791	203	-	-	-	782	32.2%
2023년	계	7,549	4,259	2,564	1,695	-	-	-	-	3,290	43.6%
	장기	4,397	2,542	1,581	961	-	-	-	-	1,855	42.2%
	중기	3,152	1,717	983	734	-	-	-	-	1,435	45.5%

<연도별 전역자 수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신규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구분	2019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중장기 제대군인	전역자	7,676	7,231	6,785	7,639	9,481
	신규가입	5,801	5,584	7,276	8,536	9,420
경상이자	전역자	1,599	864	880	597	696
	신규가입	89	76	53	32	42
취업맞춤 특기병	전역자	1,027	1,446	1,554	1,778	1,807
	신규가입	268	299	196	129	122
저소득 모범장병	전역자	-	119	112	36	91
	신규가입	-	31	18	5	6
합계	전역자	10,302	9,660	9,331	10,050	12,075
	신규가입	6,158	5,990	7,543	8,702	9,590

주: 경상이자는 개정안에서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중상이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취업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의 경우 전역년도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관련 통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취창업실적	7,007건	7,009건	7,048건
취창업워크숍	101회, 2,916명	94회, 1,893명	118회, 2,995명
일자리 발굴 기업체 상담	15,955건	15,755건	14,486건
제대군인 온·오프라인 상담	104,689건	112,134건	114,350건
출장교육	37회 226명	67회 1,368명	96회 4,355명
멘토 위촉	16분야 125명	19분야 118명	16분야 126명
박람회	-	-	100개 기업 / 2,000여명 참여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실적>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원 수(명)	78,215	83,669	91,765	97,215	108,650
취업자 수(명)	6,754	6,770	6,846	6,828	6,852
고용유지율(%)	63.9	61.8	62.3	59.3	62.4

주: 회원수는 누적회원수이며, 취업자 수는 해당연도 취업자수임

자료: 국가보훈부

<경상이자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현황>

구 분	신규대상자 (A)	이용자 수(B)	이용률(B/A)
경상이자	4,636	292	6.3%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6**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구분	국립시설		공립시설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시설개수	54	1	389	79
관람료	50(무료) 4(유료)	무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관람료 징수	

참고7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감면 현황

구분	시설명	감면율	근거
국립 (3)	고궁·능원 (4대궁/종묘/조선왕릉)	50%	○ 제대군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2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전쟁기념관	100%	○ 제대군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2 ※ 실제 전국민 대상 무료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50%	○ 제대군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2 ※ 실제 전국민 대상 무료 운영
공립 (9)	세종시립민속박물관	100%	○ 세종특별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
	목포근대역사관	100%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6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100%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6호
	목포자연사박물관	100%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목포문학관	100%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5호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100%	○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10호
	강원도 탄광문화촌	100%	○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6호
	동강생태공원	100%	○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인제군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100%	○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제9호

참고8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료 감면 관련 타 입법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8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52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및 시행령 제10조의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시행령 제67조의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신설 2023. 7. 1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타 부처 입법례

□ 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 및 시행령 제16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3.6.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자의 의사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2.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하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